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든든한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이 동 현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
-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의 조직개편에 따라, 서울시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,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주요 내용입니다.
- 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조직개편에 의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‘담당 부서의 국장’이 참석할 수 없게 되어 ‘4급이상 공무원’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.
- 또한 ‘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’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하여 시민 권리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

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 내용도 포함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